

2022학년도 2학기 학사 운영 지침

□ 코로나19 관련 등교(출근) 기준

구분	방역당국 통보	격리기간	검사	등교기준
“본인” 확진	확진자인 경우	7일 격리	-	등교 중지
“동거인” 확진	확진자의 경우 (재택치료자)	격리기간 없음	3일 이내 PCR검사, 6~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	음성 확인시 등교 가능
“본인”이 증상이 있는 경우	약을 복용하지 않고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	신속항원검사(병원)		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 중지 (음성 확인 후 등교 가능)

○ 코로나19 관련 교직원 복무 기준(병가 및 공가)

-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: 7일 격리기간 병가 인정(증빙자료: 방역당국 통보 문자)
- 동거인 확진에 따른 코로나19 검사자: 검사 당일 공가[기타(코로나19)] 인정(증빙자료: PCR 검사 결과 또는 병원진료확인서)

※ 코로나19 확진자(TIGERS+ 시스템 등록)

- 교원: 코로나19 확진자 등록(TIGERS+: 일반행정-총무복무관리-코로나19확진자 등록)
- 직원: 병가 신청 및 코로나19 확진자 등록(TIGERS+: 일반행정-총무복무관리-코로나19확진자 등록)

○ 코로나19 관련 학생 출결 기준(유고결석 기준)

- 확진자: TIGERS+ 시스템에 유고결석 신청(증빙자료: 방역당국 통보 문자)
 - 유증상자: 병원의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검사자에 한하여 유고결석 인정(증빙자료: 병원 진료확인서 또는 PCR 검사 결과)
- ※ 절차: 종합정보시스템 유고결석 신청(증빙서류 업로드 포함)서 작성 및 제출 → 학과장 승인 →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 → 유고결석확인서 출력 후 지도교수에게 제출

○ 코로나19 백신 접종자: 접종일 공가 사용, 접종 후 이상 반응 시 병가사용(※ 진료 확인 증빙 필요)

□ 학사 운영 기준: 대면 수업 원칙

○ 교원의 코로나 확진 또는 유증상 발생에 따른 휴강 발생 시 보강을 통한 대면 수업 실시

※ 관련: 학사지원팀-1809(2022. 7. 27, 2022학년도 2학기 수업시간표 열람 및 수강신청 주요 일정 안내)